

## 서울특별시 성동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으로, “재정투·융자사업”을 각각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투·융자”를 “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투자심사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제14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u>재정투·융자사업</u>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심사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u>재정투·융자사업</u>(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제3조(심사대상)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구 자체심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생략)</p> <p>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p>	<p>제1조(목적) ----- ----- ----- 「지방재정투자사업 <u>심사규칙</u>」----- ----- <u>재정투자사업</u>----- ----- ----- ----- ----- -----.</p> <p>제2조(심사기준) ----- ----- <u>재정투 자사업</u>-----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심사대상) ① ----- ----- -----.</p> <p>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p>

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용  
자하는 사업

다. (생략)

2. 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은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3. 「지방재정 투·용자사업 심  
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4. (생략)

제4조(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를 거친 경우라도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  
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  
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가.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  
자심사 후 사업비가 20억

-----  
----- 투자-----  
-----

다.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  
칙」-----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시 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

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11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투자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

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

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

의 과반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투자심사에 관

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제11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투자심사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

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투자심

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

시 성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

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

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

회”는 “투자심사위원회”로 본

다.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 제>